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통상임금 산정



글 : 박 상 진 _ 사회복지사,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휴먼 대표

☞ 통상임금의 개념 및 사용용도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총액 중에서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직책, 자격증 등)을 갖춘 근로자 모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을 말하며, 해고예고수당(30일전 예고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할 때 지급하는 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월차휴가근로수당(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월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 ‘휴가보상비’라고도 함) 등 각종 법정수당의 산정기초 및 여성근로자들의 산전후휴가 90일 중 60일 동안 각 시설에서 지급해야 할 기준임금이 됩니다.

☞☞ 통상임금 판단에 관한 대법원과 노동부의 입장차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 중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 수당의 명칭을 불문하고 그 수당이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대하여 노동부와 대법원은 약간의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노무관리상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다만, 각 사업장에서는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수당)

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가 공통적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는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실제 근무일수, 근무성적 등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수당(기말수당, 정근수당, 연월차휴가근로수당 등)
- (b) 정규 근무시간 외의 근무에 대한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c) 연월차휴가근로수당(휴가보상비)
- (d) ‘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가족수당
- (e)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닌 수당(경조비, 재해위로금, 출장비 등)

1) 노동부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다소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는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f) 기타 임시적,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사회복지시설 각 분야별 통상임금 포함 수당²⁾


현재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시설의 각 분야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2004년 기준).

※ 사회복지시설 각 분야별 통상임금 포함 수당

적용하는 인건비 지원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	대법원 판례 기준
모든 시설 공통	기본급(봉급), 종사자 복지수당	
서울시 사회복지관 종사자 보수지급 권고안	직무수당, 가계보조수당, 자격수당, 서무/경리수당	직무수당, 가계보조수당, 자격수당, 서무/경리수당, 교통비, 급량비, 가계안정지원비, 효도휴가비
서울시 시립노인종합복지관 인건비 지원기준	직무수당, 가계보조수당	직무수당, 가계보조수당, 가계지원비, 교통보조비, 가계안정지원비, 명절휴가비
생활시설공통업무지침 인건비 지원기준(장애인생활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포함)	가계보조수당, 특수근무수당	가계지원비, 특수근무수당, 장기근속수당, 교통급식비, 명절휴가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인건비 지원기준	직무수당, 가계보조비, 도지역근무수당	직무수당, 가계보조비, 도지역근무수당, 교통비,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정액급식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건비 지원기준	가계보조수당, 특수근무수당	가계보조수당, 특수근무수당, 장기근속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자활후견기관 보수 지침	자격수당	

주) 위 내용은 2004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2005년 보수체계 변동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종사자 복지수당이나 법인 자부담 수당도 통상임금인가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정부의 인건비 지원기준(가이드라인)에 규정되어 있는 수당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부담하여 지급하는 종사자복지수당이 있으며, 각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법인 자체 부담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자부담 수당”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수당의 재원을 부담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당 또한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한편, 이미 노동부는 행정해석(2002.10.04, 임금 68207-730)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지급되는 종사자 복지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2) 필자의 사견이므로 구체적인 지급실태에 따라 일부 수당에 대해서는 노동부나 법원이 달리 판단할 가능성도 있음.